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8일, 박찬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1. 20.)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2. 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찬대의원)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현재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탄핵을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1월 11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찬반토론의 요지

(곽규택의원)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사건을 3심재판에서 파기환송하면 법왜곡죄
에 해당하게 됨.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게 됨.

(박은정의의원)

2023년 독일에서도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에 따라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왜곡죄 유죄를 인정함. 우리도 법 적용을 잘못된 판사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필요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